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71

발의연월일: 2020. 7. 20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용판·한무경

강민국 · 이주환 · 김정재

지성호 · 김태흠 · 정점식

김영식 · 홍준표 · 조수진

백종헌・박 진・조명희

유경준 · 송언석 · 임이자

박성중 · 김상훈 · 김승수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,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
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피복비·야 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법적 근 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, 특히 통상적인 민간봉사조 직과는 달리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·운영 하며, 자율방범대를 설치·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미성년자,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,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, 청소년 선 도 및 보호,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시에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,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경찰서장등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·훈련·연수를 실

시할 수 있고 경찰서장등은 방범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8조 및 제9조).

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율방범대"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한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.
- 2. "자율방범대원"이란 제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
- 제3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·유영한다.
 - ② 자율방범대를 설치·운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 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명칭
 - 2. 활동구역
 - 3. 대표자의 성명
 - 4. 구성원(대표자를 포함한다)의 성명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

하는 신상정보

-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같은 항 제4호의 구성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.
- ④ 자율방범대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5. 「공직선거법」 제87조에 따른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

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6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-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- 제5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제6조(방범활동)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범활동을 한다.
 - 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 - 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 - 3. 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"경찰서장등"이라 한다)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 - 4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 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- 제7조(복장 등) ① 자율방범대원은 제6조에 따른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, 자율방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 - ②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신분증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

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8조(교육·훈련·연수) 경찰서장등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·훈련·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9조(지도) 경찰서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자율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현 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, 복장·장비의 구입 및 운영, 교육·훈련·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과태료)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범대로 본다. 다만,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